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필요한 언론중재법 개정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혁명으로 언론미디어 생태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언론중재법이 제시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따르고 있다. 법이 사회변화에 따른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지 못할 때 법치주의는 퇴색되고 법의 생명력은 반감된다.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디지털화할 시기가 벌써 지났다.



인격권 침해 보도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지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세상의 언론보도가 다 진실만은 아니다. 허위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현저하고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피해회복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요즘 같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기사는 검색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인격권 침해보도에 대하여 통상의 정정보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 기사는 인터넷상 그대로 남아있어 검색되고 유통된다. 침해상태는 상존하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거나 증폭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하듯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사는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언론조정 절차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침해기사의 삭제를 원한다. 사람의 인격권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가치가 부정되어야 한다. 굳이 잊혀질 권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보도로부터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검색과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다. 대법원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기사삭제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당연한 법리와 실무의 관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사삭제청구의 조정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댓글이 나르샤...

이미 법원의 판결, 조정, 화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되었으나, 원보도 내용이 인터넷에 복제·전파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구제절차를 반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구제가 확정된 내용이니만큼 언론중재위원회의 간이한 직권조정이나 임시조치절차를 통하여, 또는 피해자가 확정된 판결 등을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보다 간명하고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물론 댓글 작성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침해성 댓글은 인터넷을 통하여 천방지축으로 날아다니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의 기어다니는 피해구제제도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사 댓글은 명석을 깔아준 축에서 결자해지해야

언론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로 고통받거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부지기수다.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은 기사의 과급력에 편승하여 일파만파로 피해를 증폭시킨다. 댓글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피해자가 게시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게시자들이 익명이거나 그 수가 너무 많은 경우 그들을 일일이 찾아내거나 모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기사에 대한 독자의 댓글을 허용하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게시자의 익명권까지 허용하는 등으로 댓글을 유도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로서 언론사나 포털사 등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기사에 달린 댓글은 기사와는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언론사 등은 그 게시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댓글에 대하여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불법임이 명백한 댓글을 지체없이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포털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댓글은 뉴스서비스 콘텐츠의 일부로서 뉴스서비스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Delfi

AS v. Estonia Case). 한편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일괄하여 댓글에 대하여도 함께 신청하여 처리한다면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경제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언론보도에 댓글 게시판이라는 명석을 깔아 놓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언론사, 포털사 등은 불법적인 댓글에 대하여 마당개설자로서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모든 댓글이 아니라 언론보도와 관련된 댓글만 언론보도에 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게시자들인 개인들의 글을 언론행위로 보거나 그들에게 재갈물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물론 댓글 작성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언론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사나 포털사 등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언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헌법 제21조),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자 디지털 시대 언론의 책무가 아닐까? 자신이 보도한 기사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조정·중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해결해 주는 언론이야말로 오히려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당당한 언론사라는 느낌은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하는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